

WTO 體制下에서의 美國 通商法 301 條의 有用性

尹 忠 沅*

-
- I. 序 論
 - II. 301 條의 實體的·節次的 規定
 - III. 301 條에 관한 主要爭點：批判論과 擁護論
 - IV. WTO 紛爭解決制度下에서의 301 條 運用展望
 - V. 結 論
-

I. 序 論

흔히 '不公正貿易條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의 1974年 通商法 第 301 條는 外國이 通商協定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미국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또는 外國의 통상법·정책·무역관행이 부당(unjustifiable)하거나, 불합리(unreasonable)하거나 차별적(discriminatory)인 경우 USTR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통상법 중 가장 강력한 救濟手段이 되고 있는 동 조항은 이와 같이 外國의 행위가 국제통상협정에 일치하지 않거나 미국기업이 外國시장에서 상업적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 法的인 救濟手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이 外國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개방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301 조는 이와 같은 적용목적상의 특징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미국은 301 조에 의거 外國의 不公正貿易慣行을 제소하여 市場開放을 위한 通商協商을 시작하게 되며, 만일 協商이 실패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게 되는 바, 이때 보복조치는 직접적으로 301 조 발동원인을 제

* 全北大學校 商科大學 貿易學科 教授.

공한 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모든 산업분야에도 취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01 조가 원래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행에 대하여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그것이 외국정부의 행위가 관련되는 한 301 조에 의거하여 수입제한 등 보복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또한 301 조는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증권, 유통, 통신, 건설, 해운, 항공, 광고, 부동산, 경영자문, 설계, 엔지니어링, 회계 및 법률 등 모든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해외투자에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74년 通商法에서 301 조를 도입한 이래 이를 수차례 강화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1988년 綜合通商·競爭力法 제정 당시에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자유무역이념을 구현해 나간다는 명분 아래 기존의 301 조(흔히 一般 301 條라고 일컬어짐)와는 별도로 이른바 수퍼 301 조, 스페셜 301 조, 그리고 通信 301 조 등을 새로이 도입하고 이들 조항을 빈번하게 발동해 왔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주요교역상대국들은 301 조가 비록 불공정무역관행의 제거를 통한 세계자유무역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1970년대 초이후 상실된 미국의 經濟的 hegemony(economic hegemony)를 회복하려는 新重商主義的 保護主義 手段으로서 특히 동 조항이 갖고 있는 攻擊的 一方主義는 비난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또한 교역상대국들은 301 조가 빈번하게 발동되어온 배경이 經濟原理보다는 利益集團(interest groups)의 壓力과 로비활동(lobbying)에 크게 영향을 받는 미국 특유의 政治的 메카니즘(political mechanism)에 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해 왔다.

이러한 인식의 대립으로 인하여 그 동안 미국과 주요 교역대상국들간에는 통상마찰이 격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301 조의 GATT/WTO 協定違反如否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에서는 이전의 多者間協定에서 커버되지 않았던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 폭 넓은 분야에 대한 규범들이 새로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환경, 노동기준, 경쟁, 기술 등을 무역과 연계시킨 이른바 新通商 이슈 역시 WTO가 주도하여 국제규범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의 최대성과중의 하나는 이전의 GATT체제에서와는 달리 강력한 紛爭解決節次를 導入한 点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 체제 출범이후 당연히 미국 통상법 301 조의 有用性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바, 논란의 핵심은 바로 WTO 체제하에서도 미국이 지금까지 고수해 온 國內法 優先適用立場에 따라 301 조를 이전과 같이 공격적·일방적으로 남용해 나갈 것인가 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301 조 옹호론자들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運用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두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봄으로써 不公正貿易의 救濟手段으로서의 미국의 301條 運用方式을 展望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II 章에서는 우선 다수의 연구자들이 고찰해 온 바 있는 301 조의 實體的·節次的 規定을 정리해 보고 III 章에서는 301 조에 관하여 批判論者들과 擁護論者間에 제기되어 온 主要爭點들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고찰을 기초로 하여 IV 章에서는 WTO 紛爭解決制度가 갖는 含意와 함께 WTO 體制下에서 301 條의 남용은 상당히 제한을 받겠지만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것이 어떤 方向으로 運用될 것인지를 밝혀 보고 V 章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II. 301 條의 實體的·節次的 規定

1. 實體的 規定

(1) 法的 基準(報復措置의 基準)

개정된 1974년 통상법 제 301 조에 의하면 외국의 法·政策·慣行(이를 통틀어 外國의 行爲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이 通商協定을 위반하거나, 同 協定下에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이 否認되거나, 외국의 法·政策·慣行이 不當하거나, 不合理的거나 差別的이기 때문에 그것이 美國의 通商에 負擔이 되거나 이를 制限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USTR은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 가능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어느 경우이든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subject to direction,

if any, from the President).

이상의 법조항에서 보듯이 301 조를 적용하여 USTR이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制定法上的 基準(statutory standards)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USTR은 통상협정에 의거한 미국의 權利와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retaliate to protect the rights or benefits of U.S. under any trade agreement). 이를 위하여 USTR은 i) 통상협정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否認되고 있는지의 여부, ii) 외국의 法, 政策 또는 慣行이 통상협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 조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상협정에 의거한 미국의 이익을 否認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USTR은 또한 외국의 법·정책·관행이 미국의 通商에 負擔을 주거나 그것을 制限하는 경우(burden or restrict the commerce of the U.S.)와 不當하거나, 不合理하거나 또는 差別的인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301 조는 매우 광범위한 조항이며, 다른 통상법과는 달리 상품은 물론 서비스교역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USTR은 미국의 通商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制限한다면 외국과 통상협정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국가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¹⁾

(2) 義務的·裁量的 措置의 區分

그러나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1988년 법의 개정 내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USTR에 의한 報復措置가 義務的(mandatory)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와 보복조치를 취하느냐의 如否에 대해 裁量的 權限이 부여된 경우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區分과 關聯用語의 定義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措置가 義務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義務的 301條)

일단, USTR에 의한 301 조 調査가 開始되면 報復措置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즉, 조사의 개시 및 보복조치를 취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1) 예컨대, 1988년 1월 22일 미국 담배수출협회(U.S. Cigarette Export Association)는 한국의 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고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당시에 양국간의 통상협정을 위반하였다는 해명은 전혀 없었다(Leslie A. Glick, *Guide to United States Customs and Trade Laws after the Customs Modernization Act*, 2n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p.156).

USTR의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外國의 法·政策·慣行이 通商協定을 違反하거나 이에 一致하지 않거나, 또는 不當하고(unjustifiable), 美國의 通商에 負擔을 주거나 이를 制限하는 경우'이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대통령의 特別한 指示가 있을 경우 USTR은 예외적으로 報復措置를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不當한(unjustifiable)' 法·政策·慣行은 미국의 국제법상 권리를 犯하거나 一致하지 않는(反하는) 것을 의미한다.²⁾ 이는 다른 조항에서 규정된 通商協定 이외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미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表現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MFN), 기업설립권, 지적소유권 등의 보호를 否認하는 外國의 法, 政策 또는 관행 등이 포함된다.³⁾

한편, 301 조(d)의 '通商(commerce)'라는 용어는 매우 넓은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즉, 通商에는 국제무역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에는 特定商品貿易과 관련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연루되어 상품 또는 서비스교역이 행하여지는 해외직접 투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通商은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관련 산업은 보험이나 은행과 같이 국제무역과 연관이 있는 서비스 산업이거나 또는 대외무역을 수반하는 직접투자와 관련이 있는 서비스산업일 수도 있다.⁴⁾ 또한 301 조(d)에서는 'burden or restrict U.S. commerce'라는 용어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 조항에서 그러한 負擔 또는 制限은 예컨대 外國과 미국간에 海上을 이용한 상업적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外國이 동 운송선박에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USTR은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는 의미를 매우 넓게 해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USTR은 調査를 開始하기 전에 反 덤핑 또는 相計關稅의 경우와 같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被害의 存在를 解明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⁵⁾

2) Section 301(d)(4) of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3) Leslie A. Glick, *op. cit.*, p.157.

4) Section 301(d)(1) of Trade Act of 1974, as amended(emphasis added) 및 Leslie A. Glick, *op. cit.*, p.156.

5) 예컨대, 1988년 1월 한국의 담배시장제한과 관련된 청원의 경우 USTR은 피해의 판정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관행으로 인하여 1986년에 소매기준 20억 1천만달러에 달하는 시장접근기회를 박탈당했으며, 결과적으로 매년 5억 2천만달러 상당의 미국 담배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미국담배수출협회(U.S. Cigarette Export Association)의 청원서가 제출된 후 301조 조사를 개시하게 되었다(Leslie A. Glick,

한편, 이상과 같이 USTR이 의무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경우 報復措置의 形態(form of retaliation)는 USTR의 裁量이다. 그러나 301 조상의 義務的 措置의 경우 報復措置의 量(amount of retaliation)은 미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된 負擔이나 制限에 상응하는 정도이어야 하며,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이 제거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⁶⁾

그러나 다음의 경우 USTR의 의무적인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즉, USTR은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첫째, WTO의 분쟁해결기관이 채택한 보고서(panel 보고서)나 다른 통상협정상의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에서 i)외국의 관행이 미국의 권리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ii)미국의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둘째, USTR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한 경우이다. 즉 i)외국정부가 미국의 通商協定權利(U.S. trade agreement rights)를 인정하기 위하여 만족스런 조치를 취하거나, ii)위반조치를 폐지하거나 또는 미국의 통상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거나, iii)만족스런 수준에서 미국의 통상에 대한 부담의 즉각적인 해결에 합의한 경우 등이다.

셋째, 외국정부가 위반조치를 폐지하거나 미국의 통상에 대한 부담 또는 제한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補償을 提供하기로 합의한 경우

넷째, 특별한 경우에 301 조 조치의 이익에 비하여 미국경제에 역효과를 주는 경우

다섯째, 301 조 조치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경우 등이다.

(나) 措置에 관하여 裁量權이 부여된 경우(裁量的 301條)

USTR이 301 조에 의한 措置를 취하느냐 如否에 관하여 裁量的(discretionary)인 決定을 할 수 있는 경우는 '外國이 法·政策·慣行이 不合理的거나 (unreasonable) 또는 차별적(discriminatory)이고, 미국의 통상에 負擔을 주거나 制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술한 義務的(強制的)으로 조사개시와 보

op. cit., p.156).

6) 19 U.S.C. 2411(a)(3) 및 Julia Christine Bliss, "The Amendments to Section 301: Overview and Suggested Strategies for Foreign Response",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20, No.3, 1989, p.515.

복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特別한 指示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불합리한(unreasonable)’이라는 용어 역시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개정된 1974년 통상법 제 301 조 (d) (3) (A)에 의하면 外國의 法·政策·慣行이 미국의 국제법상 권리를 반드시 위반하거나 이에 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의 점에서 不公正하고 不平等한 경우 不合理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01 조 (d)에서는 또한 外國의 조치가 당해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부조화(불일치)되는 것이 아닐 경우 그러한 外國의 법은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⁷⁾ 따라서 USTR은 미국의 通商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부담 또는 제한이 존재하고 關連국가의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할 때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差別的인(discriminatory) 法, 政策 또는 慣行은 他國의 경우와 차별하여 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 대우(MFN)를 否定하는 것이 포함된다.⁸⁾

國際規則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로서 不合理的 또는 差別的인 慣行과 關連되어 있는 경우 USTR은 301 조에서 授權된 ‘모든 적절하고 가능한 조치(all appropriate and feasible action)’를 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裁量的 權限을 부여하고 있다.⁹⁾

(3) 報復措置(對應措置)의 形態와 範圍

USTR이 外國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어떤 형태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냐는 USTR의 裁量이지만 다음과 같은 3 가지로 구분된다.¹⁰⁾

① 통상협정상의 양허(trade agreement concessions)를 정지, 철회, 또는 금지할 수 있다.

7) Section 301(d)(3)(c)(i)(ii) of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및 Leslie A. Glick, *op. cit.*, p.157.

8) Section 301(d)(5)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및 Leslie A. Glick, *op. cit.*, p.158.

9) 이와 같이 appropriate and feasible action이라는 구절을 포함시킴으로써 USTR은 조치를 취하느냐 또는 취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개정된 301 조 (b)의 용어가 discretionary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회의 입법의도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합리적인 징후가 있는 경우 USTR이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다(Julia Christine Bliss, *op. cit.*, p.516).

10) 19 U.S.C. § 2411(c)(1)(A), (B), (c) as amended.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STR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외국상품에 대해 관세부과 또는 기타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¹¹⁾ 외국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다른 형태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③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외국과 구속력이 있는 협정(a binding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당해 불공정무역관행이 GSP 등 미국의 특혜관세 프로그램상의 적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USTR은 당해 특혜프로그램에 의한 무관세대우를 철회·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URAA에 의하여 추가로 부여받았다.¹²⁾

한편, 서비스의 경우 USTR은 위의 기본적인 통상법 301 조 조치에 더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또는 재량적 조치로서 연방법에 의하여 발급되는 미국시장으로의 접근권한(예컨대 허가, 인가, 명령 등)의 발급을 불허하거나 기간과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301 조 관련 청원제출일 또는 USTR의 직권조사일 이후에 인가 또는 계류중인 신청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USTR은 연방 또는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관해서는 수입과징금 또는 기타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聯邦 또는 洲의 關聯機關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¹³⁾

한편, 이상의 301 조 조치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점은 보복조치가 관련국가에 대해 無差別的인 方式(on a nondiscriminatory basis)으로 행하여지며 상품 또는 경제부문이 보복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의 행위와 관련이 있느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301 조 조치는 外國의 問題가 된 法·政策·慣行과 關聯如否를 不問하고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부문에든 취해질

11) 1988 년 법에서는 모든 경우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보다는 관세의 인상 또는 관세 특혜의 폐지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19 U.S.C. §2411(c)(5) (as amended) 및 Julia Christine Bliss, *op. cit.*, p.516. 그러나 1994 년 URAA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輸入制限形式의 보복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기타 수입제한조치' 보다는 '관세부과'를 우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취지는 보복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관세의 부과를 우선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불식하고 그 중에서 ② 번째의 수입제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만 다양한 수입제한조치 중 '관세'의 부과를 우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관세의 부과가 아닌 기타 수입제한조치를 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도 USTR은 관세의 증액을 통하여 동 조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法務部, "美國通商法研究", 1996, pp.517~518 및 19 U.S.C. §2411(c)(6).

12) 김규태, "UR 履行法을 통하여 본 美 通商法 301조", 通商法律, 法務部, Vol.6, 1995.12, p.111.

13) 朴魯馨, "미국국의 1974 년 貿易法 301條의 分析과 發動狀況", 通商法律, 法務部, 1997.12, p.23 및 김규태, 前揭書(1995.12), p.111.

수 있다.¹⁴⁾ 이와 아울러 輸出目標設定(export targeting)에 대한 USTR의 조치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동 목표설정이 발효된 기간에 걸쳐 최대한의 이익수준을 반영하여야 한다.¹⁵⁾

(4) 措置의 履行에 대한 監視, 措置의 修正 및 終了

USTR은 보복조치의 이행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외국이 措置 또는 協定을 만족스럽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간주하게 될 경우 USTR은 다른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¹⁶⁾ 만일 보복조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보복조치를 취한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USTR은 聯邦官報(Federal Register)에 공고하고 의회에 서면통지를 한 후 동 조치를 종료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¹⁷⁾

마지막으로 만일 청원자 또는 보복조치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국내산업의 대표가 동 조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1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4년 후에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그러한 요구가 있게 되면 USTR은 동 요구를 받은 직후 조치를 계속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동 조치의 효과와 미국경제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節次的 規定

(1) 調査의 開始

302 조에 의하면 USTR의 301 조 조사는 우선 모든 利害關係者(interested

14) 예컨대 1985년 9월 16일 브라질의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산업에 대한 수입제한에 대하여 USTR이 調査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대통령은 브라질의 대미수출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동 제재품목 리스트에는 브라질산 일부 약품류와 종이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분명히 이들 품목들은 컴퓨터 산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301 조에 의거 보복조치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301 조 조사대상으로 지목된 국가(a country-targeted for Section 301 investigations)의 수출업자들은 보복조치대상에서 자기제품을 제외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보복 조치를 다루는 청문회에 참가하여야 한다(Leslie A. Glick, *op. cit.*, p.159).

15) 19 U.S.C. §2411(c)(6), export targeting은 특정기업이나 산업이 특정종류의 상품 수출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의미한다(19 U.S.C. §2411(d)(3)(E) 및 朴魯馨, 前掲書, p.23).

16) 19 U.S.C. §2416(b).

17) Leslie A. Glick, *op. cit.*, p.160.

persons)¹⁸⁾가 301 조 발동을 요청하고 그 근거를 기재한 청원서(petition)를 USTR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USTR은 청원서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에 동 청원을 심사하여 調查開始如否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301 조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개시는 USTR의 직권에 의한 자체발의(self-initiation)를 통해서도 가능한바, 이러한 경우에는 民間部門諮問委員會(private sector advisory committee)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다.¹⁹⁾

그러나 USTR은 청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에 의한 경우를 막론하고 301 조 하에서 조치가능한 것으로 열거된 외국의 법·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를 裁量的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USTR은 調查開始如否를 결정할 수 있는 裁量權을 갖는다.²⁰⁾

여하간 USTR은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막론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reason for determination)와 청원의 요약내용을 聯邦官報에 공고하여야 한다.²¹⁾

(2) 調査 및 措置의 決定

303 조에서는 國內法上의 調査와 병행하여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國際的 節次(international procedures)를 밟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USTR은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同日字에 相關문제에 대하여 당해국가와 協議(consultations)를 要請하여야 한다. USTR은 協議에 필요한 충분한 기초를 확보하여 청원을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90일 동안 동 요청을 연기할 수 있다. 만일, 당해 사안이 WTO와 같은 通商協定の 적용대상이고, 동 협정에서 정한 협의기간의 종료일 또는 협의개시후 150일째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USTR은 이의 해결을 위하여 신속하게 동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公式的인 紛爭解決節次(formal dispute settlement under

18) 利害關係者는 국내기업과 노동자, 소비자 이익단체대표, 미국제품 수출업자, 그리고 301 조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등을 포함하나, 이들에 국한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다. Section 301(d)(9) 및 Leslie A. Glick, *op. cit.*, p158.

19)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청원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다.

20) 朴魯磐, 前掲書, p.12; Jagdish Bhagwati, *The World Trading System at Ris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p.130~131.

21) 15 C.F.R. § 2006. 3.

the trade agreement)에 따른 審議를 要請하여야 한다. USTR은 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를 준비함에 있어서 청원자나 기타 적절한 민간부문자문위원회로부터 정보 및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²²⁾

301 조에서는 USTR이 외국의 법·정책·관행이 301 조의 不公正規準(un-fairness criteria)을 充足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할 期限(time limits)과, 만일 긍정적인 경우 어떠한 措置가 취해져야 하는지(what action, if any, should be taken)를 결정하여야 할 期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決定은 302 조의 調査에 근거해야 하며, 만일 通商協定과 관련이 있는 경우 國際的인 協議와 同 協定上의 紛爭解決節次의 結果에 근거하여야 한다.

USTR에 의한 措置의 決定期限은 다음과 같이 調査의 性格(the nature of the investigation)에 따라 다르다.

① GATT/WTO 등의 通商協定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8 개월 또는 同 通商協定上의 紛爭解決節次가 終了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 중 빠른 날짜.

② 通商協定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2 월 이내(따라서 ①의 경우보다 ②의 경우에 301 조 조치가 신속하게 결정된다).

③ 지적재산권 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USTR이 TRIPs를 포함한 通商協定과 관련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6 개월이내 USTR의 조치결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경우, 조치기한은 관련 외국정부와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90 일 한도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따라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경우 일반적인 301 조 조사의 경우보다 신속하게 조치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다).

USTR은 당해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청회를 포함한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²³⁾ 민간부문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만일 迅速措置(expeditious action)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을 내린 후 공청회 등 위의 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USTR은 措置를 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ITC의 견해를 요청할 수 있다.²⁴⁾

22) Jagdish Bhagwat, *op. cit.*, p.131 및 김규태, “美國의 通商關聯法概觀”, 産業研究員, 1996.6, p.146.

23) 15 C.F.R. § 2006.3.

(3) 措置의 施行

USTR은 305 조에 따라 措置를 취하기로 決定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301 조에 의한 措置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USTR은 ① 청원자 또는 직권조사인 경우 국내산업의 다수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② USTR이 문제해결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substantial progress)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미국의 권리 또는 만족스런 해결을 위하여 연기가 필요하거나 바람직스러운 경우에는 180 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이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30 일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9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Ⅲ. 301 條에 관한 主要爭點 : 批判論과 擁護論

미국의 통상법을 전체적으로 볼 때 301 조는 반덤핑법과 함께 가장 빈번한 쟁점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교역대상국에 대하여 그만큼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발동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301 조의 본질에 대하여 미국과 교역국간에 주요쟁점사항(시각의 차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301 조에 대하여 주요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들에 대하여 그 논거와 반론들은 정리해 보기로 한다.²⁵⁾

1. 保護貿易主義 手段

301 조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일반 301 조, 수퍼 301 조, 그리고 스페셜 301 조가 모두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수입을 봉쇄하기 위한 관세인상위협으로 保護主義의 口實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마스텔(Greg

24) Section 304(b)(1)(B), (C).

25) 본 장에서 주요 쟁점은 주로 '일반 301 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나, 사실상 '수퍼 301 조'와 '스페셜 301 조'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Mastel)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와는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실제에 있어서 301 조에 따른 보복조치가 결정되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1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 이 기간 중 미국은 문제가 되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집중적인 協議을 거친다는 점에서 301 조는 그와 관련한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시장의 개방을 위한 관련국가의 정부조치를 촉구하려는 데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²⁶⁾

이 외에도 301 조를 지지하는 미국의 행정부 관료들이나 일부 학자들은 301 조가 미국에 의하여 행사되는 시장개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품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政策의 結合(combination)으로서 그것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모든 교역국에 혜택을 준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다른 지지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301 조는 본질적으로 현재 다른 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는 관행들을 법전화한 것이나, 다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301 조에 의한 미국정부의 조치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뿐이라는 것이다.²⁷⁾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외국의 대미수출품이 미국시장에서 자국상품보다 경쟁력이 강한 경우에 301 조에 의한 조사와 보복조치가 이루어진 예가 많다는 점에서 마스텔의 평가를 그대로 인정하는 논자들은 많지 않다.²⁸⁾ 특히 301 조가 입법화된 배경은 1970년대 초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미국의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역조상태에 빠짐으로써 경제적 헤게모니가 상실되었던 데 있기 때문에 保護貿易主義의 手段이라는 주장의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301 조 비판자들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기업, 국민에 의한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거시경제적 현상일 뿐 무역정책에 의하여 받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 당시 무역수지 악화현상은 달러가치의 과대평가에 의한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⁹⁾

26) Greg Mastel, *American Trade Laws after Uruguay Round*, M.E. Sharpe, Inc., 1996, p.52. 301 조에 관한 주요쟁점 중 보호무역주의·일방적 공격주의·무역전쟁의 유발요인이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은 본서를 주로 인용하였음.

27) Harry L. Freeman, "A Slam Dun[el] -How Section 301 Could Survive under the New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Economy*, March/April 1994, p.44.

28) 高俊誠, "WTO 시대의 美通商法 301條에 대한 재평가", *美州經濟*, 제 2 권 1 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8. 1/2 월호, p.68.

29) 蔡旭·王允鍾, "美國 수퍼 301 조의 特性, 運營實績 및 評價", *美州經濟*, 創刊號,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7. 11/12 月, p.47.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은 다른 국가의 불공정무역관행이나 미국제품의 품질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요인은 연방예산의 적자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근본적인 원인의 치료책인 연방예산의 적자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³⁰⁾

2. 攻擊的 一方主義

앞서와 같이 301 조가 保護主義 通商政策手段이라는 비난과 함께 흔히 논쟁의 대상이 되는 측면은 수퍼 301 조는 물론 일반 301 조 역시 攻擊的 一方主義 (aggressive unilateralism)의 所産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을 가하는 논자들은 301조를 미국의 오만한 행동 또는 GATT/WTO 분쟁해결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비록 USTR이 일반 301 조 및 수퍼 301 조에 의거 조치를 내릴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調査過程에서 외국정부와 協議를 거친다고 해도 措置可能한 內容面에서 매우 攻擊的이고 一方的이라는 것이다.

일반 301 조에 의한 조치내용을 보면 USTR의 의무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또는 재량적 조치가 허용되어 있는 경우를 불문하고 그 範圍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공격적 일방주의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심지어는 USTR이 WTO 협정에서 금지되지 않는 貿易報復(GSP의 공여중단 등)이나, 외국과 관련된 분야로서 非貿易報復(군사지원 또는 경제개발지원의 중단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적 일방주의에 호소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301 조의 보복조치는 외국의 문제된 행위에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상품이나 서비스 부문에 대해 취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공격성이 강하다고 인식되어 질 수 있다.³¹⁾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반론도 만만치

30) 이에 관한 주장은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1984년 통상·관세법 제정 당시 제기되었으므로 앞서의 1984년 통상·관세법 입법 당시의 논쟁을 다시 참고 할 것. 또한 Carl Sovrnlov, "Super 301: Gone But Not Forgotten", *Journal of World Trade*, Vol.26, No.3, June 1992, pp.131~132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

31) 한편, 수퍼 301 조의 경우는 공격적 일방주의라는 지적과 비난을 더욱 강력하게 받고 있다. 즉, 동 조에 의하면 USTR이 매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180일 이내에 우선협상관행(PFPC)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때 특정 국가의 무역관행실시여부에 대한 決定이 USTR에 의하여 一方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보복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때 보복조치의 대상부문도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장벽과 관련 여부에 무관하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않게 제기되고 있다.

마스텔은 전술한 그의 저서에서 301 조에 대한 비판자의 다수는 동 조의 立法史를 분명히 조사하지 않은 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반론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301 조는 당초부터 다자간 무역분쟁해결절차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사실 미국은 UR 협정에서의 분쟁해결기한을 협상하기 위하여 301 조하의 조치를 위한 기한(time lines for action)을 이용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UR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301 조에서의 기간제한(time limits)은 다자간 무역분쟁해결절차와 완전히 일치시키기 위하여 더욱 가다듬어졌다. 301 조에서는 WTO 협정을 위반한 301 조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다자간 무역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協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紛爭解決패널(dispute settlement panel)이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패소판정을 하게되는 경우, 대통령은 그러한 패널의 판정만을 기초로 하여 보복조치의 행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²⁾ 이상의 마스텔의 주장이 전형적으로 암시하듯이 301 조 지지자들은 301 조에 대한 ‘攻撃的 一方主義’의 所産이라는 비난은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족의 탓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충분한 분쟁해결절차를 갖춘 通商協定에 의하여 커버되지 않는 쟁점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301 조의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UR 협상 이전에는 농산물, 서비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다수의 쟁점들은 다자간 통상협정의 틀 내에서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즉, 지난 10여년간 이러한 분야의 사건들은 GATT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수의 301 조 관련사건들은 GATT를 벗어나서 해결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WTO 협정은 농산물, 서비스, 그리고 지적소유권 분야가 다소간 커버되고 있어 사실상 多者間 協定에 의한 紛爭解決範圍가 크게 擴大되었다. 따라서 301 조 지지자들도 앞으로는 301 조 관련사건의 상당수가 다자간 무역분쟁해결절차와 긴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해결되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301 조 적용대상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거나 또는 문제의 쟁점 자체가 WTO 협정에서 다루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당수의 주요 교역국들이 아직 WTO 회원국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301 조 특히 수퍼 301 조는 공격적 일방주의의 典型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32) Greg. Mastel, *op. cit.*, p.53.

아닌 상태로 남아 있으며, 민간업자들의 담합과 강요된 기술이전 등을 비롯한 통상문제들이 WTO 협정의 범위 밖에 남아 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불공정무역을 용인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301조 지지자들은 후자보다는 전자 즉, 301 조에 의거 보복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만(Harry L. Freeman)은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1 조의 運命이나 位相에 대하여 보다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다. 즉, 앞으로 WTO 협정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301 조는 자국의 苦情을 WTO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질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WTO 협정에 의하여 확실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option)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리만 역시 WTO 협정이 다루는 範圍(WTO's purview)는 상당히 애매한 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한 만약 미국이 WTO 관할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대해 301 조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적용대상국가는 WTO에 신속하게 제소할 것이며, 이에 대해 WTO는 과거보다 훨씬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³³⁾

이상과 같은 마스텔과 프리만의 301 조에 대한 지지론 또는 긍정론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으나, 301 조의 일방주의에 대하여 대다수의 논자들은 각자의 실증분석 또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클라인(William R. Cline), 크루거(Anne Krueger), 바그와티(Jagdish Bhagwati), 그리고 베이야드(Thomas Bayyard) 및 일리어트(Kimberly A. Elliot)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³⁴⁾ 특히 바그와티는 그의 저서³⁵⁾에서 301 조의 일방주의를 매우 설득력있게 비판하고 있다. 즉, 미국이 단독으로 정한 日程(time schedules)에 따라 관세보복위협을 가함으로써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처사는 多者間 通商시스템을 창설하고 유지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국가가 攻撃的 一方主義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다자간 통상시스템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미국이 다자간 협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33) Harry L. Freeman, *op. cit.*, p.47.

34) 이들의 부정적인 입장은 蔡旭·王允鍾, 前掲書, p.47 참조.

35) Jagdish Bhagwati, *op. cit.*, pp.54~57.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언뜻 보기에 다자간 협정을 준수하는 것이 다른 국민국가(state-nations)와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자국이 秩序있는 節次(orderly procedures)와 法の 規則(rule of law)을 준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셈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그것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法이 法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Robert Hudec 교수가 말하는 正當化된 不服從(justified disobedience)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이른 바 創造的 不法行爲(creative illegality)를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즉, 法을 개선시키기 위한 違反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공공연하게 다자간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둘째, 이와 같이 다른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貿易讓許(trade concessions)를 이끌어 내는 경우 301 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는 정치적 세력이 약한 다른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무역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될 것이다. 즉, 약소국을 희생시켜 강대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USTR이 301 조 적용을 통한 외국시장의 개방은 無差別的인 方式(non-discriminatory fashion)으로 이루어 질 것임을 거듭 강조해 왔으나 事前의 意圖는 事後의 結果에 의하여 일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USTR을 움직여 보려는 미국내 로비활동은 실제로 특정시장이 전반적으로 개방되었는지의 여부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로비활동을 하는 자들의 목적은 확연하게 그들의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마찬가지로 301 조 적용대상국들은 미국의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적인 압력이 당해국가에서의 마켓웨어가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상당히 증가하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안다. 그러므로 게임은 모든 당사국이 政治的 現實(political realities)로 인식함으로써 암묵적인 무역전환을 피하는 선에서 획책되어 진다는 것이다.

셋째, 자국의 견해를 억지로 강요하거나 일방적인 무역양허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완력을 사용하는 것은 通商關係에서 公正性的 原理(ethos of fairness)를 해치게 되며, 그렇게 될 경우 開放市場(open markets)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령, 或者가 301 조는 利他的인 動機(altruistic reasons)로서만 적용할 것이라는 설득력이 없는 가정을 해본다고 해도(예컨대 UR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완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미국이 '慈悲로운 獨裁국가(benign

dictator)'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관념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즉, 미국이 교역상 대국에 대해 설득과 상호적인 양허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물론 해결속도는 느리겠지만) 바람직한 通商制度에 대한 자국만의 定義를 내리고 그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制度(institution)라는 것은 자비로운 독재(benign dictatorship)의 관념을 바탕으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엄연한 교훈은 바로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그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정책을 수행하는 자(practitioners of realpolitic)들이 불평하는 바와 같이 매우 느리고 비능률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바그와티는 이상과 같은 점들은 지적하면서 공격적 일방주의의 수단인 301 조는 중대한 결점을 지니고 있으며, 협정을 체결해서라도 이와 같은 수단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貿易戰爭의 誘發要因

301 조에 대한 一般의인 爭點 또는 評價로서 반대론자들은 그것이 報復에 대한 報復의 惡循環을 가져옴으로써 貿易戰爭(trade war)을 誘發시키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多者主義와 協力主義에 바탕을 둔 世界貿易시스템을 위반함으로써 미국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고 기존의 무역관행을 고집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결코 正의 效果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마스텔은 보복조치가 이루어 질 경우 교역상대국이 역보복위협을 하는 예가 상당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당해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 등 다른 옵션을 끝까지 추구한 후에야 비로소 보복위협을 가하거나 실제로 보복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둘째, 결과적으로 301 조의 적용은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양국간에 장기간에 걸친 보복이나 이에 대한 역보복의 발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301 조에 의거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짐에

36) 이 같은 주장은 Carl Governlov, *op. cit.*, p.130 참조.

있어서 그 조치 대상의 선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 1929년 世界大恐慌(Great Depression) 당시와 같은 貿易戰爭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스텔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301 조 지지자들의 설득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바그와티를 비롯한 301 조 비판론자들의 논거를 종합해 보면 원래 주요목표국가이었던 일본시장개방 등 일부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⁷⁾

첫째, 301 조에 의거한 보복조치는 역보복조치를 초래함으로써 어렵게 마무리된 UR 협상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며, 끝내 국제통상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 둘째,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정부개입을 확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관리무역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일본, 한국, 대만,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적용국가들이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당해국가가 미국의 안보문제와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로부터 반감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넷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관세인상 등 보복조치의 효과가 미국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³⁸⁾

4. 不公正貿易概念의 恣意的 解釋

公正貿易에 어긋난다는 論理에 의거하여 貿易報復措置를 취하는 것이 301 조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主流 經濟學者들은 公正貿易의 論理가 본질적으로 自由主義 通商理念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그것이 強大國의 保護貿易政策의 手段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매우 강력하게 제기하여 왔다. 즉, 301 조는 平平한 競技場論 또는 同等한 競爭條件을 논거로 하고 있어 表面상으로 合理的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에 따라 勞動費用, 근면성과 나태함과 같은 作業倫理,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 무역의존도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으며, 결국 擴大市場秩序原理를 위반함으로써 교역당사

37) 이하의 내용은 정봉기, “수퍼 301 條의 復活背景과 향후 展開方向”, 月刊 美州通商情報, 大韓貿易振興公社, 통권 30 호, 1994.4, pp.8~9를 인용함.

38)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퍼 301 조의 경우 그 적용 결과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통상부문의 특정조치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의 富를 減少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公正貿易論의 妥當性如否를 떠나서라도 미국이 公正貿易·不公正貿易에 관한 恣意的 解釋을 하고 있다는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국의 통상정책이나 통상법으로 인하여 침해를 받는 경우 침해를 받은 국가가 Escape Clause와 같은 보상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主權國家의 權利라는 점은 국제무역규범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즉, 이러한 국제무역규범상의 보상적·보복적 조치 규정은 사실 1945년 ITO설립안에서도 규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ITO설립 실패 후 GATT 22조와 23조에서 그러한 입법정신을 계승시켜 놓았다. 물론 이러한 국제규범의 기초는 동경라운드에서 다결된 '紛爭解決을 管掌 하는 規定 및 節次에 관한 諒解(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에서 더욱 체계화·구체화되었으며, 더욱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WTO협정에서는 분쟁해결 절차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이 되는 불공정무역관행의 포괄범위에 관하여 301조와 국제규범이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그에 따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의 301조 조치가 不公正貿易慣行을 해석함에 있어서 多者間 貿易協定상의 무역규범을 벗어난 행위로서 그것이 다른 체약국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로 보고 있다. 그러나 301조에서의 不公正貿易慣行은 외국의 무역관행이 國際協定과 不一致하거나 또는 通商協定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는 미국의 혜택을 거부하거나 不當하거나, 不合理的거나 差別的이고 미국의 通商에 負擔이 되거나 制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301조의 전반부의 표현은 종전의 GATT 23조 또는 그 이후의 국제규범상의 표현과 일치되지만 후반부의 표현은 不公正貿易慣行에 관한 미국의 恣意的(arbitrary) 解釋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즉, 301조에 의하면 특정국가의 法·政策·慣行이 비록 國際協定에 一致하더라도 不當하거나 不合理的거나 差別的이고 미국의 通商에 負擔이 되거나 制限하고 있다고 USTR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 교역국들은 그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자의적 해석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³⁹⁾

5. 美國內 政治市場의 메카니즘

301 조가 입법화된 배경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1970년대 초부터 미국의 무역적자와 정부예산적자,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의 증가 등 경제적인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역대상국들이 301 조를 비난 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301 조가 최초로 입법화 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의 적용과정에서 미국 政治市場의 特有한 메카니즘상 經濟原理보다는 政治的 作用이 압도해 왔다는 점이다.

물론 교역대상국의 이러한 視角은 301 조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통상법에 대해서도 쏠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법조항은 301 조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반덤핑법, 상계관세법, 그리고 후술하는 337 조 등 다른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구제법에 대해서도 같은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

우선 1974년 通商法에 301 조가 도입되기 직전인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의회는 행정부가 통상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의회는 헌법이 부여한 통상정책에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미국의회는 통상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制度的인 뒷받침(institutional advocate)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관세위원회(TC)를 미국무역위원회(USITC)로, 특별통상대표부(STR)를 미국통상대표부(USTR)로 개칭함과 동시에 두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차단하였다. 301 조를 도입한 것도 의회가 이러한 헌법상의 권한을 확인하고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의회가 통상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인 실천자(activist)의 역할을 하게 된 바탕은 본질적으로 의회멤버들이 자신의 선거구민들이나 선거자금을 제

39) 다시 말하면, 특정국가의 무역장벽의 수준이나 그 국가에 고유한 개별분야의 무역장벽 자체는 그것이 多者間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多者間 貿易協商의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한 즉, 다자간 무역질서에 의해 그 합법성이 인정되는 한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해석함으로써 301 조를 비난하고 있다. 大韓貿易振興公社, “美國의 對韓市場開放壓力과 對應戰略 - 美 新通商法の 實證的 分析에 의한 考察 -”, 實公資料 89-12, 1989.3, p.65.

공하는 이익집단⁴⁰⁾들이 통상정책과 그에 바탕을 둔 통상법의 각 조항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의회멤버들은 再選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의 여론 또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압력행사와 로비활동에 의하여 그들의 행태를 보여 왔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현상이 매우 뚜렷하였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301 조의 적용실태를 보면 관련 미국산업의 경쟁력 약화여부와는 관계 없이 외국시장의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복위협을 당해 왔으며, 그 배경에는 利益集團들이 강력한 壓力團體를 조직하여 상·하원 멤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言論媒體를 이용하여 有權者들에게 301 조 등의 발동필요성을 홍보하고 이를 부추겨 왔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본질적으로 특정산업의 이익집단이 전개하는 로비활동과 압력행사 또는 특정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선거구민들의 301 조 구제조치 요구에 대해 의회멤버들보다는 덜 민감한 입장을 보여 왔다.⁴¹⁾

40) 이익집단을 保護貿易을 지지하는 集團(생산자 및 관련단체, 노조 등)과 自由貿易을 지지하는 集團(소비자 및 관련단체, 유통·금융 등 서비스업, 농업 및 관련단체·노조 등)으로 크게 분류할 때 301 조와 관련한 이익집단은 表面的으로 自由貿易을 지지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국제적인 역할 분담과 관련한 公平(equity)과 公正(fairness) 概念의 확대적용을 心情的으로 동감하는 정책결정자 및 일반시민들도 넓은 의미의 301 조를 지지하는 집단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前掲書(1989.3), p.141.

41) 특히, 일반 301 조보다 훨씬 강력한 구제조치인 슈퍼 301 조가 입법화된 1988 년 종합통상·경쟁력법 통과 당시에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레이건 대통령은 1981 년 취임직후부터 自由貿易, 規則緩和, 그리고 조세삭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강력히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의회내에서 레이건 행정부가 實踐者的 通商政策(activist trade policy)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특히 일본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보호주의 법안인 이른바 게파르트條案(Gephart Amendment)이 제기되자 레이건 행정부는 결국 타협안으로서 슈퍼 301 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화당 소속 대통령인 클린턴의 경우는 1990 년 선거운동 당시부터 자유-공정 무역의 명분을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슈퍼 301 조의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였으며, 당선후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슈퍼 301 조를 부활시켜오고 있다. 특히 그는 그 동안 보스니아 사태, 북한과의 핵협상 등 일련의 외교정책에서 우유부단한 이미지를 보였다. 그는 국내여론을 만회하기 위하여 슈퍼 301 조의 부활카드를 이용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1998 년부터 그의 성추문이 국내여론의 초점이 되고 최악의 곤경에 빠지게 되자 1999 년에 다시 슈퍼 301 조를 부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Thomas O. Bayard & Kimberly Ann Elliot, *Reciprocity and Retaliation in U.S. Trade Polic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eptember 1994, pp.13~16, pp.32~33의 내용 참조.

IV. WTO 紛爭解決制度下에서의 301 條 運用展望

1. WTO 紛爭解決制度의 含意

주지하는 바와 같이 UR 협상의 최대성과는 GATT 紛爭解決制度(GATT dispute resolution system)의 改革이라고 볼 수 있다.⁴²⁾ 즉 WTO/GATT 1994 제도에서는 WTO가 분쟁해결에 관하여 강제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면서 拘束力 있는 判決을 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를 도입하였다.⁴³⁾ 이러한 분쟁해결제도는 이른 바 紛爭解決機構(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하여 운영되며,⁴⁴⁾ 동 기구는 증거채택, 청문회 개최 및 판결권한을 가진 패널(panel)을 설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上訴機構(Appellate Body)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 있다.⁴⁵⁾

또한 WTO/GATT 1994에서는 분쟁처리,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을 채택함에 있어서 엄격한 日程(timetables)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건은 패널보고서에 대해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9개월 내에 판결이 내려지며, 항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12개월 내에 판결이 내려진다.⁴⁶⁾ WTO 패널의 결정은 DSB가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채택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上訴機構의 決定은 DSB가 만장일치로 기각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

42) 이하의 301 조와 WTO 紛爭解決制度和 相衝점에 관한 설명은 많은 부분에 걸쳐 Thomas J. Schoenbaum, "The Theory of Contestable Markets in the International Trade: A Rationale for Justifiable Unilateralism to Combat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 *Journal of World Trade*, Vol. 30, No. 3, June 1996, pp.171~179의 내용을 참조함.

43) 새로운 WTO 紛爭解決制度는 '紛爭解決에 관한 規則과 節次에 관한 讓解(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에서 규정되어 있다. GATT Secretariat,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 The Legal Texts", Genova, June 1994, Annex 2, pp.404~434. 흔히 '紛爭解決讓解(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로 불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DSU'로 표현하기로 한다.

44) DSU, 제 2 조.

45) DSU, 제 17 조.

46) 예외적인 경우 판결 기간은 총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DSU, 제 20 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WTO 분쟁해결절차는 規範指向的 接近方式(rule-oriented approach)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DSB의 재판관할영역을 피하거나 정치적인 수단에 의하여 법적 결정을 지연 또는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어떤 決定이 DSB에 의하여 승인되어진 후에는 당해 회원국은 合理的인 期間內(a reasonable time)에 동 결정에 따라야 한다.⁴⁷⁾ 合理的인 期間은 DSB와 당해 회원국간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당사국간에 상호합의 될 수도 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속력이 있는 仲裁(arbitration)를 통한 판결에 따르게 된다.⁴⁸⁾

만일 분쟁이 패널의 결정이 내려진 대로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을 경우 제소국은 讓許停止(suspension of concession)措置를 취하고 패소국과 만족스러운 보상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상을 하게 된다. 이때 다시 한번 당해 문제는 구속력이 있는 仲裁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제소국은 협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無效化(nullification)되고 損傷(impairment)된 만큼 讓許를 停止할 수 있는 권리를 DSB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⁴⁹⁾

한 걸음 더 나아가 WTO 분쟁해결제도하에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一方的 措置(unilateral action)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紛爭解決讓解(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제 23 조는 협정위반이 발생하거나 협정의 목적 달성이 방해받았을 경우 회원국들이 一方的 措置를 취하지 않는다는 서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회원국들은 양허의 정지 또는 기타의무와 관련하여 DSU의 제 21 조 및 제 22 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DSB의 승인 없이 무역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⁵⁰⁾

이러한 WTO 분쟁해결제도하에서 一方的 措置를 취할 수 있는 여지(scope)가 있느냐의 여부는 미국은 물론 다른 회원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미국 통상법 제 301 조에 의거한 조치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서로 대립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301條에 대하여 批判的인 立場을 가진 자들은 앞서 主要爭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WTO 분쟁해결제도상 당사국간에 協議를 거쳐 분쟁이 해결되지 못

47) DSU, 제 21 조 (3).

48) DSU, 제 21 조 (3)(a)(b) 및 (c).

49) DSU, 제 22 조.

50) DSU, 제 23 조 (2)(a),(b).

할 경우 구속력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개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국이 301 조를 남용한다면 이는 분명히 攻擊的 一方主義로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제 301 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자들의 견해로는 一方的인 自助措置(unilateral self-help)에 대한 國際慣習法상의 權利가 크게 축소되어 왔다고 인정하면서도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⁵¹⁾ 301 條에 의거하여 一方的인 措置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⁵²⁾

2. WTO 紛爭解決制度下에서 301 條의 選擇的 運用方式

(1) 義務的 301 條에 該當하는 事件

(WTO/GATT 1994 協定の 範圍에 해당되는 紛爭)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外國의 法, 政策 또는 慣行이 通商協定을 위반하거나 이에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不當(unjustifiable)하고, 미국의 通商에 負擔을 주거나 制限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義務的 301條(mandatory section 301)⁵³⁾가 발동되어지며, USTR은 관련 분쟁이 WTO에서 決定되어 질 수 있도록 제소하여야 한다.

환언하면 어느 분쟁이 WTO/GATT 1994 協定の 위반과 관련된 경우 USTR은 外國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하여 WTO에 提訴함과 동시에 반드시(의무적으로) 301 條를 발동하여야 한다.⁵⁴⁾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WTO/GATT 1994 協定과 같이 通商協定에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에 제소함과 동시에 국내법

51) 國際慣習法上の 自助措置에 관해서는 Oscar Schachter, *International Law in Theory and Practi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Dordrecht, 1991, pp.184~220; Omar Yousif Elageb, *The Legality of Non-Forcible Countermeasures in International Law*, Allen and Unwin, London, 1988; Elisabeth Zoller, *Peacetime Remedies: An Analysis of Countermeasur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84; Yoshiro Matsui, "Countermeasures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37 *Japanese Annual of Int'l Law* 1, 1994, 그리고 Thomas J. Schoenbaum, *op. cit.*, pp.170~171 등을 참조.

52) Thmas J. Schoenbaum, *op. cit.*, pp.173~178.

53) 義務的 301 條에 대해서는 앞서의 '301 條'의 實体的 規定에 고찰하였으나 이와 함께 Thomas J. Schoenbaum, *op. cit.*, pp.168~169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음.

54) 19 U.S.C. §2413(a).

인 301 조를 개시하는 것이 國際法상 適當한 것이냐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301 조의 발동을 正當視하는 者들은 어느 회원국이 WTO 협정에 포함되는 내용을 위반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위반국에 대하여 一方的 措置를 開始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견해로는 'WTO의 紛爭解決讓解(DSU)' 제 23 조에 따라 默示的 危脅의 性格을 지닐 경우 301 條에 의한 一方的 措置의 發動을 禁止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301 條 支持者들의 立場을 다시 정리해 보면 미국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법이나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하여 WTO의 DSB에 提訴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301 條를 發動할 수 있으며, 이 때 WTO가 미국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릴 경우(승소할 경우) 미국은 DSU에 의거하여 외국이 WTO 협정에 부응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WTO 提訴와 함께 301 條 發動을 同時에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301 條 支持者들은 WTO 판결에 따른 외국과의 協定을 효과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301 조는 DSB로부터 授權되기 전이나 패널 또는 上訴機構로부터 判決이 내려지기 전에도 미국이 양허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一方的인 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⁵⁵⁾ 따라서 問題의 核心은 이러한 一方的 措置가 미국의 國內法에는 一致하지만⁵⁶⁾ 분명히 國際義務를 위반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국가는 DSB로부터 미국에 대해 보상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므로 제 23 조는 미국이 301 조에 의거한 一方的 措置를 취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축소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義務的 301 條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이 DSB의 판결에 역행하여 국제적인 비난과 무역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一方的 措置를 취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義務的 301 條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 보복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DSB 판결이 否定的(negative)인 경우 義務的 報復措置로부터 逃避(escape)가 허용되어 있으며, 이 때 USTR이 301 조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⁵⁷⁾

55) 19 U.S.C. § 2411(a).

56) 전술한 바와 같이 URAA에 의거하여 미국법은 WTO/GATT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URAA § 102(a), 108 stat, 4809.

57) 19 U.S.C. § 2411(a)(2)(A).

(2) 裁量的 301 條에 該當하는 事件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外國의 法, 政策 또는 慣行이 不合理的거나(unreasonable) 또는 차별적(discriminatory)이고 미국의 통상에 負擔을 주거나 制限하는 경우'는 보복조치를 취하느냐의 如否에 대해 USTR이 裁量的(discretionary) 權限을 갖고 있으며, 이를 흔히 裁量的 301 條(discretionary section 301)⁵⁸⁾라고 한다. 裁量的 301 條에서 특히 外國의 法, 政策 또는 慣行이 '差別的(discriminatory)'이라는 의미는 內國民待遇 또는 最惠國待遇를 否認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USTR의 裁量的 措置는 國際法上的 義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해 질 수 있다.

301條 支持者들은 裁量的 301 條의 性格上 一方의 措置를 취할 수 있는 範圍는 全술 한 義務的 301 條의 경우보다 넓다고 보고 있다. 즉 동 조항에서는 WTO/GATT 1994 協定에 包含되지 않은 不公正貿易慣行에 대해 一方의 措置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301 조의 '市場機會條項(market opportunities clause)'으로서 동 조항은 市場接近(market access)에 대한 장애 특히 기업의 反競爭의 慣行과 規制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⁵⁹⁾ 301 條 支持者들은 이러한 市場接近에 대한 障礙와 關聯한 사건의 경우 USTR이 DSU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301 조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市場接近에의 障礙와 關聯된 경우는 國際協定과 關聯(結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SU와 제 23 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國際慣習法에 의거하여 自助的 措置(self-help)가 許容된다는 것이다.⁶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1 條 支持者들은 裁量的 301 條의 適用時마저 一方의인 報復措置를 취하는데 있어서 重大한 제약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58) 裁量的 301 條 역시 앞서의 '301 條'의 實體的 規定에서 고찰한 바 있으나, 이와 함께 Thomas J. Sheonbaum, *op. cit.*, pp.169~170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음.

59) 19 U.S.C. § 2411(d)(2)(B)(i)(iv).

60) URAA의 行政提案書(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에 의하면 USTR은 이러한 경우에도 DSU의 제 26 조에 규정된 이른 바 非違反提訴(non-violation complaint) 절차를 취함으로써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호소할 수 있는 재량권(option)을 갖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非違反訴訟理論(theory of non-violation complaint)은 비록 회원국이 WTO/GATT 1994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조치가 동 협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무효화 또는 손상되거나 동 협정의 목적 달성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다. Thomas J. Shoebaum, *op. cit.*, p.175 footnote 97.

즉 만일 미국이 裁量的 301條에 따른 報復措置를 발동하게 될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WTO/GATT 1994 協定の 規準 또는 約速을 위반하는 救濟措置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일 미국이 발동한 보복조치가 WTO/GATT 1994 規準에 결부된다면 미국은 DSU에 따라 逆報復措置를 다루기 위한 紛爭解決節次(counter-retaliatory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에 연루됨으로써 被害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301 조 지지자들은 두 가지 효과적인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⁶¹⁾

첫째, USTR이 國際法을 근거로 한 對應措置로서 WTO/GATT 1994 規準을 위반하는 裁制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보복조치의 대상국은 國際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對應措置 또는 對應報復은 認定된 報償方法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따르는 어려움은 制限的 企業慣行(RBP: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에 관한 국제관습법 또는 인습법의 규범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더욱 효과적인 전략은 制限的 企業慣行에 대해 一方的 措置를 正當化하기 위하여 USTR이 國際法상의 對抗主義(international law doctrine of opposability)에 따라 301 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對抗主義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우선 一國이 엄밀히 말하면 국제법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重大한 利害關係를 주장하며, 그 후 國際慣行 중 灰色地帶(grey area)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國際法規範을 채택함에 있어서 자국에게 유리한 立地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⁶²⁾ 이와 같이 對抗主義的 立場은 國際法の 立法過程에서 創造的 變化의 作因(agent)이며 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⁶³⁾

61) *Ibid.*, pp.175~176.

62) 처음에 '불법적인(illegal)' 一方的 措置는 몇몇 국가들의 입장에 대하여 대항적(opposable)인 것일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그러한 對抗的 措置가 國際法상의 規範(international law rules)으로 발전된다. 그 좋은 예는 大陸棚(international shelf)에 관한 1945년 트루만 선언(Truman Proclamation of 1945)이다. 동 선언은 처음엔 對抗的 措置로 취해졌으나 그 이후의 UN協約 또는 海洋法을 통하여 國際規範이 되었다. *Ibid.*, p.176, footnote No.99.

63) 이러한 아이디어는 일본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Soji Yamamoto와 Shiny Murase의 저서와 주장을 통하여 발전되었다. 對抗性을 갖추기 위하여 一方的 措置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i) 對抗措置를 취하는 국가의 國力이 그 만큼 강하며, ii) 對抗措置는 어디까지나 同質性 및 國際社會의 全体的인 利害와 一致해야 한다

결국 301 조 지지자들은 WTO 분쟁해결 제도에 의거한 訴訟(claim)를 同時에 제기하거나 아니면 雙務의 討議機會(bilateral forum)를 이용하여 이상의 두 가지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당해 문제가 WTO/GATT 1944 협정에 관련되지 않는다면 對應措置 또는 對向主義의 立場을 취하고 나서 DSU 제 26 조에 의거한 이른바 非違返訴訟(non-violation complaint)⁶⁴ 또는 情況訴訟(situation complaint)⁶⁵을 함께 提起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명분은 制限的 企業慣行의 存在와 默認(existence and toleration of RBP)이 WTO/GATT 協定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무효화 또는 해치고 그 목적달성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즉 특정국가의 특수한 利害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iii)對抗措置는 信義誠實原則에 입각하여야 한다. Shinya Murase, "The Concept of Opposability and Its Implications in International Laws" unpublished draft manuscript, 1995, pp.14~16 및 Thomas J. Schoenbaum, *op. cit.*, p.176, footnote No. 98.

- 64) DSU의 제 26 조에 규정된 非違返訴訟節次는 본래 GATT 제 23 조 1 (b)에 근원을 두고 있다. 본 규정에 의거하여 WTO 패널은 비록 협정의 위반과 연루되지 않더라도 수입을 방해하는 조치는 회원국들이 동 협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당연히 당사국간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非違返無效化(non-violation nullification)와 관련하여 단지 3개의 GATT 패널 보고서만이 체약국에 의하여 채택된바 있다. 즉 Ammonium Sulphate에 대한 호주의 보조금 II BISD 188 (1952); Sardines 수입에 대한 독일의 대우, 1st Supp. BISD 53 (1953); Dilseeds와 그와 관련이 있는 Animal-Feed Proteins의 가공업자 및 생산자들에게 지급된 EECC의 보조금, 37 the Supp. BISD86 (1991) 등이 그것이다. 非違返訴訟의 결과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회원국이 i) 무역양허(trade concession)가 존재하고, ii) 양허공여국이 양허와 관련되어 있는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조치가 취하여 졌으며, iii) 당초 양허협상이 이루어질 때 제소국이 당연히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던 바가 좌절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DSU 제 26 조에 의하면 이러한 3가지를 이유로 하여 취해진 일국의 조치가 타국의 혜택을 무효화 또는 손상시킬 경우 당해 조치를 철회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만족스러운 調整(adjustment)에 임하여야 한다. Thomas J. Schoenbaum, *op. cit.*, p.176, footnote 100.
- 65) 情況訴訟은 원래 GATT 제 23 조 1 (c)에서 유래하고 있는 바 同條에는 '어떤 다른 情況의 存在'로 인하여 GATT 協定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目標達成이 손상 받게 되는 사건에 대한 紛爭解決을 규정하고 있다. DSU의 제 26 조에서는 제소국이 당해제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자세한 진술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DSU의 절차상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어지기 위해서는 제소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의 同意가 필요하다. 한편 制限的 營業慣行(restrictive business practice)에 대한 政府의 默認(governmental toleration)이 있는 경우 非違返訴訟를 할 것인지 情況訴訟을 할 것인지 또는 두 가지 訴訟을 병행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조치와 관련된 사건이나 정부가 조치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문제는 非違返訴訟이 적절하다. 반면 무효화와 훼손의 근본원인이 단지 민간기업의 행위이라면 情況訴訟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Ibid.*, p.176, footnote 101.

(3) 措置의 根據를 選擇할 수 있는 事件

앞서의 두 가지 경우와는 달리 WTO/GATT 1994 협정을 適用할 것인지의 如否가 분명하지 않은 事件들이 있다. 이러한 좋은 예는 후지필름(Fuji Film)과 관련하여 일본에 대해 이스트만 코닥주식회사(Eastman Kodak Company)에 의하여 301 조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들 수 있는 바,⁶⁶⁾ 동 사건은 원래 組織的인 反競爭的 慣行에 대해 일본정부가 묵인하였다는 점을 논거로 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 사건은 일본이 反트러스트 基準을 差別的으로 適用한 점을 주장함으로써 GATT III 조 4 항의 위반사항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다. 많은 사건, 아마도 대부분의 사건들은 WTO/GATT 제도상의 法的權利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制限的 慣行에 대한 默認 行爲에도 다 같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USTR과 民間 利害當事者들은 보다 많은 사건들을 裁量的 301 條에 연계시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一方的 報復措置를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最大化 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301 조 비판자들과 지지자들을 불문하고 공통된 의견은 비록 301 조를 방패로 삼아 制限的 企業慣行에 대처해 나가는 정책이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USTR은 '救濟措置에 따르는 어려운 問題(remedy problem)' 때문에 自暴的인 結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66) Fuji Film 사건은 일본에서의 Kodak Film 시장을 확대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장벽으로 작용한 制限的 營業慣行과 Keiretsu의 연계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이 가해진 소송이다. 동 사건에서는 i) Fuji 필름사가 일본 내 주요 필름도매상을 통제하고 있다. ii) Fuji 필름사는 사진인화지의 주요시장인 사진현상소(photo-processing laboratories)의 영업망을 통제하고 있다. iii) Fuji 필름사는 리베이트(rebate)와 價格 固定(price-fixing)과 같은 反競爭的 慣行을 통하여 일본시장을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iv) Fuji 필름사의 제도는 미쓰이 그룹은행(Mitsui Group banks)과의 금융 연대망에 의하여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는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관할하는 日本公正去來委員會(Japan Fair Trade Commission)를 포함한 日本 政府에 의하여 묵인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점등이 주장되었다. Kodak 필름사가 裁量的 301 조(discretionary section 301)에 의거하여 이러한 제도를 공격한 점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재량적 301 조를 통한 구제방법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서 미국 反트러스트 법에 의거 訴訟를 제기할 수 있으며 WTO에 非違反訴訟을 제기하도록 USTR에 請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01 조 소송의 장점은 Kodak과 USTR이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 중 어느 한가지 방법을 추구하거나 또는 3가지 방법 모두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3가지 방법은 i) WTO에 非違反訴訟을 提起하거나, ii) 日本公正去來委員會가 獨占禁止法을 強化하거나, iii) 일본의 필름 배급업자들이 소매업자들에게 Kodak 필름을 공급하도록 일본통상성(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이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다. Fed. Reg. 35447(July 7, 1995) 및 Thomas J. Scheonbaum, *op. cit.*, p.177, footnote No. 104.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301 조 지지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법률적으로나마 정치적으로 매우 강력할 경우에 한하여 301 조가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미국이 취하는 제재조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V. 結 論

미국 통상법 제 301 조는 지난 1974년 미국내 利益集團의 로비活動과 만성적인 貿易赤字에 따른 미국의 喪失된 強大國 신드롬(diminished giant syndrome)으로 인하여 입법화된 이래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自由-公正貿易(free and fair trade)의 實現과 正當化 할 수 있는 一方主義(justificable unilateralism)라는 名分 또는 論據를 갖고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301 조는 名分 또는 論據如何를 막론하고 비판자들과 교역상대국들로부터 그것이 우회적인 保護主義 手段이자 경제적 강대국이 남용하는 攻擊的 一方主義의 所産이라는 점, 그리고 301 조의 實體的 規定이나 節次的 規定들이 GATT/WTO 協定과 相衝되기 때문에 자칫 교역상대국들과 貿易戰爭을 誘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비난을 받아 왔다. 301 조에 대한 비판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비판론자들은 301 조가 GATT/WTO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不公正貿易의 救濟手段으로서 입법화되었다고 하지만 實際的으로는 미국이 不公正貿易의 概念에 대해 恣意的인 解釋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立法當時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 適用過程에서 經濟原理보다는 미국 특유의 政治市場 메카니즘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의 결과 세계는 이전의 수차례에 걸친 多者間協定과는 달리 規範 指向的인 性格이 강할 뿐만 아니라 廣範圍한 分野를 ครอบคลุม하고 있는 WTO 協定을 이끌어 내게 되었으며, 특히 協定違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紛爭解決制度는 提訴國이나 被提訴國의 입장에서 볼 때 客觀性和 公正性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면에서 대폭 진전된 國際貿易 規範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의 여건하에서 特定國家의 不公正貿易 救濟手段인 美國 通商法 第301條의 有用性이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는 미국의 입장과 교역상대국의 입장에서 다같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國際協定과 國內法이 相衝될 경우 前者가 自己執行條約(self-executing treaty)이 아니라면 國內法을 優先適用 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WTO 체제 출범 후 미국이 301 조를 어떻게 運用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 세계무역 질서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1999년 12월 22일) 알려진 바와 같이 바나나 수입과 관련하여 미국과 분쟁을 치루던 EU의 提訴에 대해 WTO 패널이 “미국 통상법 제 301 조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이 이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에 WTO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정식으로 밝힘에 따라 향후에도 미국이 301 조를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교묘하게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교역상대국들의 301 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미국 통상법 제 301 조는 이전과는 適用方式面에서 달라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경우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룬 一般 301 條 뿐만 아니라 수퍼 301 條, 스페셜 301 條, 그리고 통신 301 條 등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수단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어 교역상대국들의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經濟的·政治的 興件에 따라 이들 조항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UR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하여 앞장서 온 협상주도국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01 조는 되도록 WTO 紛爭解決制度와의 法適用上 衝突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規準(criteria)에 바탕을 두고 IV 章 2 節에서 정리한 3 가지 選擇的 方式으로 運用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301 조는 향후 貿易制裁手段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WTO 紛爭解決諒解(DSU)와 기타의 WTO 協定下에서 미국의 權利를 補完하고 強化하기 위한 協商手段(negotiation tool)으로 이용되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내 301 조 옹호론자들은 향후 USTR이 DSU와 國際經濟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301 조가 최대한의 영향력과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DSU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국이 敗訴하는 경우에도 WTO 紛爭解決機構(DSB)의 決定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도 함께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UR

협상과정에서 회원국들과 紛爭解決諒解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301 조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301 조를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 하는 데에도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301 조 특히 裁量의 301 條는 최근 新通商 이슈 중의 중요한 분야로 논의되고 있으면서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競爭 라운드(CR: Competition Round)가 지지부진할 경우 市場競合理論(contestable-market theory)에 의거하여 이용되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市場競合性を 높임으로써 미국은 외국시장에의 접근을 확대하고 외국정부 또는 민간기업의 制限의 企業慣行에 의하여 발생하는 무역왜곡을 제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 高俊誠, “WTO 시대의 美通商法 301 條에 대한 재평가”, 美州經濟, 제 2 권 1 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8. 1/2 월호.
- 김규태, “UR 履行法을 통하여 본 美 通商法 301 조”, 通商法律, 法務部, Vol.6, 1995.12.
- _____, “美國의 通商關聯法概觀”, 産業研究員, 1996.6.
- 大韓貿易振興公社, “美國의 對韓市場開放壓力과 對應戰略 - 美 新通商法の 實證의 分析에 의한 考察 -”, 貿公資料 89-12, 1989.3.
- 朴魯聲, “美國의 1974 년 貿易法 301 條의 分析과 發動狀況”, 通商法律, 法務部, 1997.12.
- 法務部, “美國通商法研究”, 1996.
- 정봉기, “수퍼 301 條의 復活背景과 향후 展開方向”, 月刊 美州通商情報, 大韓貿易振興公社, 통권 30 호, 1994.4.
- 蔡旭·王允鍾, “美國 수퍼 301 조의 特性, 運營實績 및 評價”, 美州經濟, 創刊號,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7. 11/12월.
- Bayard, Thomas O. & Kimberly Ann Elliot, “Reciprocity and Retaliation in U.S. Trade Polic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eptember 1994.
- Bhagwati, Jagdish, *The World Trading System at Ris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Bliss, Julia Christine, “The Amendments to Section 301: Overview and Su-

- ggested Strategies for Foreign Response”,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20, No.3, 1989.
- Elageb, Omar Yousif, *The Legality of Non-Forcible Countermeasures in International Law*, Allen and Unwin, London, 1988.
- Freeman, Harry L., “A Slam Dun[el]-How Section 301 Could Survive under the New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Economy*, March/April 1994.
- GATT Secretariat,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The Legal Texts”, Geneva, June 1994, Annex 2.
- Glick, Leslie A., *Guide to United States Customs and Trade Laws after the Customs Modernization Act*, 2n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 Mastel, Greg, *American Trade Laws after Uruguay Round*, M.E. Sharpe, Inc., 1996.
- Murase, Shinya, “The Concept of Opposability and Its Implications in International Laws”, unpublished draft manuscript, 1995.
- Schachter, Oscar, *International Law in Theory and Practi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Dordrecht. 1991.
- Schoenbaum, Thomas J., “The Theory of Contestable Markets in the International Trade: A Rationale for Justifiable Unilateralism to Combat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 *Journal of World Trade*, Vol. 30, No. 3, June 1996.
- Sovernlov, Carl, “Super 301: Gone But Not Forgotten”, *Journal of World Trade*, Vol.26, No.3, June 1992.
- Yoshiro Matsui, “Countermeasures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37 *Japanese Annual of Int’l Law* 1, 1994.
- Zoller, Elisabeth, *Peacetime Remedies: An Analysis of Countermeasur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84.